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예산안 등 반영 의무화 및
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한 등 조정〉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27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예산안 등 반영 의무화(안 제34조제17호, 제61조의2 및 제71조제8호 신설)	3
2.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기한 등 조정(안 제52조 및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9
V . 입법의 재정영향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7. 14.

다. 회 부 일 : 2026.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신설, 제52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신설, 제71조제8호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예산안 등 반영 의무화 (안 제34조제17호, 제61조의2 및 제71조제8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예산안의 첨부서류 -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 (중 략)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u><신 설></u> <u><신 설></u> ○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기금조성계획 - (중 략) - 예비타당성조사 미 실시 사업 내역 및 사유 <u><신 설></u>	○ 예산안의 첨부서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내역 ○ 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반영 - 정부는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 ○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내역

개정안은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반영 내역을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결산은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심의를 통해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재정통제기능과 재정운용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

는 환류기능 등을 가짐.¹⁾

「국회법」 제84조제2항은 정부가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²⁾, 「국가재정법」에는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환류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실제 정부의 결산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는 정부가 결산이 의결된 해의 다음 연도 1~2월경에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5월에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있음.

정부가 제출한 조치결과 및 후속 조치결과는 정부의 예산안 등 편성과정 및 국회의 예산안 등 심의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데 그치고,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직접적으로 환류되지는 못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직전 2개 회계연도(2022 또는 2023 회계연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반복 시정요구 건수는 305건(15.3%)으로, 이 중 70건은 최근 3년 연속으로 시정요구된 것이며, 최근 5년간 반복된 시정요구의 비율은 매년 10%를

1)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재정」, 2026. 3.

2)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회하고 있음.³⁾

[5년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2023 회계연도	2024 회계연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240	193	227	297	305
전체 시정요구	1,881	1,416	1,916	2,319	1,987
반복 시정요구 비율	12.8	13.6	11.8	12.8	1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2026. 7.

이와 같이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시정요구가 반복되는 것은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재정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약화시키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 결산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그 반영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결산제도의 핵심 취지인 예산안 환류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3)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2026. 7.

다만, 개정안은 국회가 6월 30일까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시기는 5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음.⁴⁾

이에 따라 국회 결산심사가 6월 30일까지 완료되는 경우에도 시정요구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없으므로, 기획예산처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별도의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17. 제61조의2에 따른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내역
<u><신 설></u>	제61조의2(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 요구 사항 반영)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결산 심 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 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 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 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 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제61조의2에 따른 국회의 결산 심 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기

현 행	개 정 안
	<u>금운용계획안 반영 내역</u>

2.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기한 등 조정 (안 제52조 및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중앙관서 예비비사용명세서 및 독립기관 예비금사용명세서 재정경제부 제출	2월 말일	2월 15일 ※ 총선 시 현행 유지(이하 같음)
재정경제부 국가결산보고서 기획예산처 및 감사원 제출	4월 10일	3월 25일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 재정경제부 송부	5월 20일	5월 6일
정부 국가결산보고서 등 국회 제출	5월 31일	5월 15일

개정안은 국회 결산심사가 6월 임시국회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결산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국회 결산심사 결과가 다음 예산안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현행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16일 앞당기고, 이에 맞추어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정부 내의 관련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임.

참고로,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현행 ‘정기회 개회 전’에서 ‘6월 30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929호)이 개정안과 함께 발의되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

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등 결산 관련 정부 내부 일정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음.⁵⁾

또한, 「국회법」은 국회로 하여금 결산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⁶⁾

정부가 5월 31일까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가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한 것은 결산심사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완료함으로써 그 결과가 예산안 편성·심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 결산심사가 적시에 개시·완료되지 못해 결산 심사 결과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⁷⁾

5)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7) [참고] 연도별 결산 국회 심의 일자 참조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⁸⁾,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가 결산심사를 더욱 이른 시점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환류가 국회 결산심사 제도의 핵심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안 환류를 위한 여건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⁹⁾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등의 작성기간은 13일 단축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국가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은 3일 단축되며, 감사원의 결산검사 기간은 2일 늘어나고,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은 2일 단축됨. 이처럼 다른 일정에 비해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등의 작성기간이 크게 단축되는데, 관련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단축 기간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결산 관련 일정

8)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현행 ‘정기회 개회 전’에서 ‘6월 30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929호)이 개정안과 함께 발의되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9) 결산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국회는 정부의 재정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를 제시하는 등 정부에 대한 사후적인 재정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회의 의견은 정부의 차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됨. 결산이 예산안의 편성·심사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결산서의 제출기한을 앞당겨 국회의 결산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4. 5.).

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결산보고서 등의 국회 제출 기한 외에 정부 내부 일정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결산 관련 일정을 현행대로 하도록 한 것은, 해당 연도 5월 29일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5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재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등의 국회 제출 외에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등 정부 내부 일정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적어 보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단계별 단축 기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재정경제부는 결산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현금흐름표가 새로 도입되어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 내부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u>2월말까지</u>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 ----- ----- <u>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u>5월 31일</u>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 ----- <u>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u> -----.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u>2월 말일까지</u>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 ----- ----- ----- <u>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u> ----- -----.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u>2월말까지</u>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u>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u> ----- -----

현 행	개 정 안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 ----- -----3월 2 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 에는 4월 10일)-----.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 ----- -----5월 6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는 5월 20일)-----.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 ----- ----- -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 되는 해에는 5월 31일)-----.

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⁰⁾

문 의 처
02)6788-5152

10)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 고

연도별 결산 국회 심의 일자

구 분	결산 제출일	상임위 최초 상정일	예결위 상정일	예결위 의결일	본회의 의결일
2025회계연도 결산	2026. 5. 29.	2026. 8. 12.	2026. 8. 24.	※ 2026. 9. 22. 기준 미처리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2025. 8. 18.	2025. 8. 25.	2025. 11. 27.	2025. 11. 27.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2024. 8. 13.	2024. 9. 2.	2024. 11. 29.	2024. 12. 2.
2022회계연도 결산	2023. 5. 31.	2023. 8. 17.	2023. 8. 30.	2023. 12. 20.	2023. 12. 20.
2021회계연도 결산	2022. 5. 31.	2022. 8. 17.	2022. 8. 29.	2022. 11. 7.	2022. 11. 10.
2020회계연도 결산	2021. 5. 31.	2021. 8. 17.	2021. 9. 6.	2021. 12. 2.	2021. 12. 2.
2019회계연도 결산	2020. 6. 1.	2020. 8. 20.	2020. 8. 24.	2020. 11. 12.	2020. 11. 19.
2018회계연도 결산	2019. 5. 31.	2019. 8. 19.	2019. 8. 26.	2019. 10. 22.	2019. 10. 31.
2017회계연도 결산	2018. 5. 31.	2018. 8. 21.	2018. 8. 21.	2018. 12. 7.	2018. 12. 8.
2016회계연도 결산	2017. 5. 31.	2017. 8. 16.	2017. 8. 21.	2017. 12. 5.	2017. 12. 6.
2015회계연도 결산	2016. 5. 31.	2016. 7. 7.	2016. 7. 12.	2016. 9. 1.	2016. 9. 2.
2014회계연도 결산	2015. 5. 29.	2015. 6. 25.	2015. 8. 18.	2015. 9. 8.	2015. 9. 8.